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의자 : 김원이 · 조계원 · 김동아

한준호 · 장철민 · 최혁진

허영 · 송재봉 · 고민정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정부 ·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

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,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의 제목 “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)”을 “(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통시장의”를 “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”로, “전통시장 화재공제”를 “화재공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통시장”을 “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의2(<u>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</u>) ① 정부는 <u>전통시장의</u>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 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<u>전통시장 화재공제</u> 제도를 운영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전통시장</u>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4조의2(<u>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</u>) ① ----- <u>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-----화재공제-----.</u></p> <p>② ----- <u>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-----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